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10530 제출연월일 : 2025. 5. 15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로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나 나무·토석 등 장애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1조를 삭제한다.

제52조 본문 중 "제49조 또는 제51조"를 "제49조"로 한다.

제5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"을 "제1항 및 제2항"으로, "해당한다)가"를 "해당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"로 한다.

①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벌칙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51조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

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제1항제43호 중 "제49조부터 제53조까지"를 "제49조, 제52 조 및 제53조"로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1조(벌칙) 행정청이 아닌 자로	<u><삭 제></u>
서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	
의 규정에 따른 허가나 동의를	
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	
따른 행위를 한 자는 6개월 이	
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	
벌금에 처한다.	
제52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	제52조(양벌규정)
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	
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	
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<u>제49</u>	<u>체49</u>
조 또는 제51조의 위반행위를	조
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	
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	
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	
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	
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	
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	
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	
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
제53조(과태료) <u><신 설></u>	제53조(과태료) ① 행정청이 아닌
	자로서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
	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나 동
	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

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 경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(시· 도지사가 건설하는 댐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만 <u>해당</u> 한다)가 부과·징수한다.

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게는
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
한다.
<u>②</u> (현행 제1항과 같음)
③ 제1항 및 제2항
해당
한다)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